

I

적용 기준

1. **적용대상** :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등 모든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

2. 적용시기

가. 이사비, 분묘보상액

2024년도 보상단가 적용일('24.4.1.) ~ 2025년도 보상단가 결정시까지

나. 영농손실액, 주거이전비

「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시스템 활용」에 의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(www.reb.or.kr) 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용

II

이 사 비

□ 근거규정 :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(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) 및 별표4

< (별표 4) 이사비 기준 >

주택연면적기준	이 사 비		
	노 임	차량운임	포 장 비
33㎡ 미만	3명분	1대분	(임금+차량운임) × 0.15
33㎡ 이상 49.5㎡ 미만	4명분	2대분	“
49.5㎡ 이상 66㎡ 미만	5명분	2.5대분	“
66㎡ 이상 99㎡ 미만	6명분	3대분	“
99㎡ 이상	8명분	4대분	“

□ 보상기준

-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<별표4>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
- (노 임) 통계작성기관이 작성·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기준
- 대한건설협회 공표 노임단가 적용 : 165,545원(공표일자 : 2024.1.1.)
- (차량운임)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 기준
- 한국교통연구원 '23년도 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업체 조사 결과 적용 : 240,000원

□ 지급액

(단위 : 원, '24.3.31.현재 기준)

주택연면적기준	이 사 비			
	지급액(적용) (=A+B+C)	노 임 [Ⓐ]	차량운임 [Ⓑ]	포장비 [Ⓒ]
33㎡ 미만	847,130	496,635 (3명분)	240,000 (1대)	110,495
33㎡ 이상 49.5㎡ 미만	1,313,500	662,180 (4명분)	480,000 (2대)	171,327
49.5㎡ 이상 66㎡ 미만	1,641,880	827,725 (5명분)	600,000 (2.5대)	214,158
66㎡ 이상 99㎡ 미만	1,970,260	993,270 (6명분)	720,000 (3대)	256,990
99㎡ 이상	2,627,010	1,324,360 (8명분)	960,000 (4대)	342,654

* 이사비 : 10원 미만 끝수 버림(국고금관리법 제47조)

Ⅲ 분묘보상액

□ 근거규정

-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(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)

*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단서 :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

□ 보상기준

- 연고자가 있는 분묘(유연분묘)에 대한 보상은 분묘이전비,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, 연고자가 없는 분묘(무연분묘)에 대한 보상액은 유연 분묘이전비 및 잡비의 50%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

* 단, 석물이전비는 감정평가 후 보상

□ 지급액(적용)

(단위 : 원, '24.3.31.현재 기준)

구 분	단 장	합 장	3합장	4합장	5합장	6합장	아 장
유 연 (분묘이전비 +잡비 +이전보조비)	3,910,000	5,090,000	6,040,000	6,740,000	7,220,000	7,450,000	2,500,000
무 연 (분묘이전비 +잡비)	1,320,000	1,910,000	2,390,000	2,740,000	2,980,000	3,090,000	620,000